



민법·가정법

변호사 : 신혜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 조카를 입양하고 싶은데

<문> 저는 미국 시민권자인 40대 주부입니다. 1년 전 한국에 있는 남동생이 이혼해 8세난 저의 조카딸을 혼자 키우게 됐습니다. 남동생은 직장인이기 때문에 70세 된 저의 어머니가 지금껏 조카를 보살펴 오셨습니다. 얼마전 남동생이 미국 출장 때 조카를 데리고 왔습니다. 조카는 엄마 없이 지내다가 저와 제 아이들이 따뜻하게 정을 주니 한국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물어옵니다. 남편은 조카딸을 입양해 키우자는데 입양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통해 영주권을 획득할 경우는 입양아가 만 16세에 이르기 전에 입양의 모든 법적 절차가 완결돼야 하며 입양아가 적어도 2년 이상 양부모의 법적 보호 하에 양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생활해야만 입양아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조카의 친부모가 모두 입양에 법적으로 동의할 경우 거주지 법원에 입양 신청서를 접수시키면 자격증을 갖춘 소셜 워커가 시체를 검토, 입양이 조카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보호한다고 판단하면 법원이 귀하를 조카의 법적 부모로 판결하게 됩니다.

<답> 가능합니다. 영주권 문제가 결부되지 않은 입양은 입양아의 연령에 제한 없이 가능하나 입양을

조카가 현재 8세이므로 입양 판결과 더불어 귀하와 함께 2년 생활한 후 조카의 영주권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문 재혼할 때 개인 재산 보호책은

<문> 저는 10세 딸이 한명 있는 35세 여성으로 곧 재혼하게 됩니다. 제겐 작은 아파트가 하나 있고 제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혼하더라도 이 아파트는 제 개인재산으로 보호받아 딸의 대학 학비와 결혼자금으로 쓰고 싶습니다. 재혼할 남자도 개인재산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Community Property) 제도의 적용을 미리 막고 미래에 부부가 될 사람들의 재산권과 채무를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정하는 계약입니다. 귀하의 경우 혼인 후에도 귀하가 계속 아파트를 관리할 경우 귀하의 아파트는 커뮤니티 프러퍼티 제도에 의해 귀하의 단독 개인재산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나 배우자 될 분과 혼인 전에 혼전 합의를서를 작성함으로써 귀하의 아파트나 상대방의 다른 재산도 본인들의 합의에 의해 혼인 후에도 계속적으로 개인재산으로 남겨둘 수 있습니다.

<답> 귀하의 배우자 될 분과 함께 혼인 전에 「혼전 합의서」(Premarital Agreement)를 작성하십시오. 혼전 합의서란 혼인 전후에 취득한 모든 재산에 대해 캘리포니아 가정법의 「커뮤니티 프러퍼티」

문 숙부가 남긴 유서의 서명이 가짜 같은데

<문> 저는 40대 직장인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홀로 계신 73세의 숙부님을 저의 아내와 함께 모시고 살았습니다. 1년전 LA 지사로 전근 발령을 받았고 숙부님은 샌프란시스코에 남기를 원하셔서 저의 가족만 LA로 왔습니다.

와 수술 직후의 건강상태를 감안해 유서작성 당시 숙부님이 법적으로 유서를 작성하기에 충분한 정신적 능력을 갖고 계셨는지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얼마전 숙부님은 갑자기 간암 진단을 받았고 수술 후 회복을 제대로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 때 40대 전후의 한 여자가 저의 가족이 LA로 온 이래로 숙부님을 모셔왔고 숙부님이 수술 직후에 본인에게 유서를 남기셨다며 유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유서에 따르면 숙부님의 저택은 그 여자에게 상속되고 모든 상속 과정을 그 여자가 책임지고 관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서의 숙부님 서명은 제가 평소 알고 있던 서명과는 다릅니다. 숙부님에게는 제가 유일한 친척입니다. 문제의 유서가 가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넷째, 숙부님이 수술 직후 자신을 돌보아주던 여자의 강요나 압력에 의해 유서를 작성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답> 귀하의 문제의 유서의 합법성 여부에 대해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서에 대한 이의신청은 상속 전문 변호사에 의해 신중히 다루어져 합니다.

첫째, 유서가 모든 법적 요구조건을 갖췄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숙부님의 서명이 조작된 것인지 여부를 유서작성 당시 증인을 상대로 자세히 알아보아야 합니다.

셋째, 숙부님이 실제로 서명했다면 숙부님의 연세

「지상상담」은 독자들이 엮는 페이지입니다. 이민·법률·부동산·세금·노동문제 등에 관해 질문이 있으면 본보 편집국 지상상담자에게 서면질문을 해주십시오. 질문서신에는 낯동인의 전화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라며, 개별적인 서신회답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편지보내실 주소: The Korea Times 4525 Wilshire Blvd. LA, CA 90010

용자·재용자
SIMPLY THE BEST \*SHORT PAY 상담해 드립니다.
주역용자·재용자
NO POINT, NO COST 프로그램
기장 낮은 이자율 보장
5%, 10% 다운 용지가능
세금보고서, 잔고증명 필요없음
현 집값에 상관없이 즉시 용자 (2,3,4차)
1시간내에 결과 연락
일주일안에 현금 가능
크레딧카드 빛 많으신 분
사원자금이 필요하신 분
100% 세금공제
HI-TECH FINANCIAL
CHRISTINA LIM
회사 (213)934-4600 / 비퍼 (213) 882-3451
크리스티나 임